

ROTORK 제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일반판매조건("본 일반 판매조건")

1. 해석

별지 1 에 명시된 정의 및 해석 규칙은 본 일반 판매조건에 적용된다.

2. 적용 조건

2.1 본 계약은 다음 조건들로 구성되고, 다음 조건들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 일반 판매조건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먼저 기재된 문서가 우선한다:

- (a) 승낙서에 (참조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조건
- (b) 이하 제 2.2 조를 조건으로,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거나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에 한정된, 구매주문에 (참조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조건
- (c) 본 일반 판매조건
- (d) 승낙서에서 참조된 기타 조건(구매주문 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 (e) Rotork 의 견적에 기재되거나 참조된 기타 조건(단, 그러한 견적이 승낙서나 구매주문에서 참조되어야 하고, 참조된 범위에 한함) 및
- (f) 이하 제 2.2 조를 조건으로 하여, 구매주문에서 참조된 기타 조건.

2.2 구매주문에 기재되거나 참조된 일반 조건 또는 주문 조건의 뒷면 내용 중에서, Rotork 가 공급하는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에 관련되지 않거나 고객의 공급자들에 대한 모든(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구매주문에 일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전부 배제되고 효력이 없다.

3. 구매주문 및 사양

- 3.1 고객은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 또는 그 의도된 용도와 관련하여 Rotork 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Rotork 에 제공한다.
- 3.2 Rotork 는 본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건 제품의 사양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Rotork 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4. 인도

- 4.1 Rotork 는 'FCA'(Incoterms 2010) 조건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장소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다른 주소, 혹은 그러한 장소나 주소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본건 제품이 최종 조립되는 Rotork 시설(통틀어 "인도장소")로 본건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한다. 본건 제품은 본건 제품에 대하여 예정된 인도일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더 이른 일자에 인도된다.
- 4.2 본건 제품의 인도는 Rotork 가 본건 제품을 인도장소에서 고객의 처분 하에 둘 때 완료된다.
- 4.3 Rotork 가 예정된 인도일까지 본건 제품의 인도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합의된 일자까지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10 영업일의 유예기간 후, 고객은 Rotork 에게 다음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그러한 불이행이 직, 간접적으로 고객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 (a) 당사자들 간에 합의되고 본 계약에 명시된 요율(지연된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의 가격의 일정 비율로 표시되고, 유예기간 종료 후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을 합의되고 명시된 최대기간 내에서 적용한 액수, 또는
 - (b) 그러한 요율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지연된 1 주일당, 지연된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 가격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이는 최대 5%를 한도로 한다).
- 4.4 고객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한 청구는, 지연된 본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도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제 10.2 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고객이 그러한 청구를 Rotork 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4.5 본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도 지연에 관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책 및 Rotork 의 유일한 책임은, 고객의 제 4.3 조에 명시된 금액에 대한 청구권 및 고객의 제 10.1 조 또는 제 10.2 조에 따른 해지권으로 한다.
- 4.6 Rotork 가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Rotork 가 적시에 본건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고객의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Rotork 에 제공한다.

5. 가격 및 대금지급

- 5.1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가격은 승낙서, 또는 구매주문에 기재되거나 동 문서에서 참조된 것으로 한다. 가격이 그러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격은 인도일 현재 Rotork 가 고시한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에 따른다.
- 5.2 Rotork 는 본건 제품의 인도시점 및 본건 서비스의 이행시점으로부터 그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객은 모든 청구서에 대하여, 청구서 일자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인출 가능한 자금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금은 Rotork 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 5.3 고객이 지급기일까지 본 계약상 Rotork 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연4%를 가산한 이율로 연체금액에 대하여 이자(판결 전후 모두 포함)를 지급한다. 그러한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연체금액의 실제 지급일까지 일할로 발생한다. 고객은 연체금액과 함께 이자를 지급한다.
- 5.4 본 계약상 고객이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상계, 반대청구 금액 또는 원천징수 없이(또는 그에 대한 공제 없이) 지급한다.
- 5.5 고객은 법률상 세금공제가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세금공제 없이 대금을 지급한다. 법률에 의하여 고객이 세금공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a) Rotork 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세금공제 후에 남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세금공제가 요구되지 않았다면 지급되어야 했을 금액이 되도록 하는 액수로 증액한다.
- (b) 고객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소한의 세금공제를 하며, 허용되는 기간 이내에 그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지급을 한다.
- (c) 고객은 가능한 경우, 세금공제가 이루어졌거나,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금액이 관련 과세당국에 납부되었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영수증 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Rotork 에게 만족스러운 기타 증빙을 Rotork 에 교부한다.
- 5.6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부가가치세, 사용세, 물품 또는 서비스세, 판매세나 매출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세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Rotork 로부터 유효한 청구서를 수령 하였을 때, 해당 공급이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추가 금액을 Rotork 에 지급한다.
- 6. 소유권, 위험 및 인수**
- 6.1 본건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그 파손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은 인도와 동시에 Rotork 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
- 6.2 고객은 인도 시 모든 본건 제품을 인수한다.
- 7. 보증 및 하자품**
- 7.1 Rotork 는 본 계약에 따라 Rotork 가 고객에게 판매한 모든 본건 제품이, 인도 시 다음과 같을 것임을 보증한다:
- (a) 모든 중대한 면에서 사양에 부합한다. 단, 사양에 기재된 본건 제품의 성능 특성이나 범위와 관련하여, 사양에 반대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본건 제품은 본건 제품의 완성품 조립을 담당하는 Rotork 관련 시설의 기존 환경조건(압력, 습도 또는 온도)에서 그러한 성능 특성이나 범위에 따라 작동하는 것만을 보증한다.
- (b) 자재 및 기술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
- (c) 고객의 제 3.1 조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승낙서나 구매주문에 본건 제품의 사용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
- 7.2 본건 제품이 인도로부터 18 개월 또는 시운전으로부터 12 개월의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보증기간")의 만료 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Rotork 는 그러한 하자에 대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책 및 Rotork 의 유일한 책임으로 (Rotork 의 단독 재량에 따라):
- (a) 제 7.9 조를 조건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무료로 하자 있는 본건 제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거나,
- (b) 하자 있는 본건 제품의 원 구매가격에 해당하는 적립금(credit)을 고객의 계정에 적립한다.
- 7.3 본건 제품이 제 7.2 조 또는 제 7.7 조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 교체제품에는 본건 제품에 적용되는 보증기간의 잔여기간이 적용된다.
- 7.4 Rotork 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건 제품의 제 7.1 조에 명시된 보증의 미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Rotork 가 고객이 제공한 도면, 설계 또는 사양을 준수한 결과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b) 고객이 Rotork 의 서면 동의 없이 본건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 (c) 정상 마모, 고의적 훼손, 과실 또는 Rotork 의 계열사 이외의 자에 의한 본건 제품의 기술 문서(설치, 시운전, 작동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지시나 절차 포함) 미준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7.5 제 7.2 조에 따른 고객의 구제책은 고객이 관련 보증기간 동안 하자에 관하여 Rotork 에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관련 보증청구는 무효가 된다.
- 7.6 Rotork 는 Rotork 가 본 계약상 고객에게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건 서비스가 합리적인 주의 및 기술로 수행될 것임을 고객에게 보증한다.
- 7.7 Rotork 가 제 7.6 조를 위반하는 경우, 본건 서비스의 하자에 대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책 및 Rotork 의 유일한 책임으로, Rotork 는:
- (a) 관련된 본건 서비스를 다시 수행하거나, 본건 서비스를 다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 (b) 제 7.9 조를 조건으로, Rotork 의 제 7.6 조 위반으로 인하여 손상된 본건 제품을 무료로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 7.8 제 7.7 조에 따른 고객의 구제책은 고객이 다음 중 더 짧은 기간 이내에 제 7.6 조의 위반을 Rotork 에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a) 위반한 본건 서비스의 수행 시점으로부터 180 일 또는
- (b) 고객이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14 일.
- 7.9 고객은 제 7.2(a)항 또는 제 7.7(b)항에 따른 청구의 대상인 본건 제품을 반출한 후 추후 DDP(Incoterms 2010)조건에 따른 인도장소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후, Rotork 는 수리되거나 교체된 본건 제품을 FCA(Incoterms 2010) 조건에 따른 인도장소로 인도한다. 단:
- (a) 제 7.2(a)항 또는 제 7.7(b)항에 따른 고객의 청구는 유효해야 하고,
- (b) Rotork 가 본건 제품의 반품 조건을 포기하고(또는 포기하거나) 현장에서 문제를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고객은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Rotork 와 협의해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관련 국가에서 포장 고속도로나 철도에 의하여 유사한 거리만큼 유사한 물품(또는 기타 물품의 탁송의 일부로)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Rotork 는 본건 제품을 운용하는 고객의 현장으로(또는 현장에서) 청구 대상인 본건 제품을 운반하는데 있어 고객이 부담한 합리적인 도로 또는 철도 운반비용을 고객에게 변상한다.

7.10 Rotork 가 제 7 조의 보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청구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Rotork 는 그러한 청구에 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이미 수행된 작업(평가작업 포함)에 대한 비용 명세서 및 수행될 작업에 대한 견적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이 견적서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그러한 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수행된 작업에 대하여 Rotork 가 부담한 비용을 Rotork 에 신속히 환급한다.

7.11 제 7.1(c)항을 조건으로, 고객은 어떠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할지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떠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할지 결정함에 있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요청 및 획득하였고 그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분석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8. 책임의 제한

8.1 Rotork 가 무역 통제법을 위반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Rotork 는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2 제 8.4 조를 조건으로, 고객 및 고객의 구체책에 대한 Rotork 의 모든 책임(책임이 존재하는 경우)은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a)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의 인도나 수행의 지연, 또는 인도나 수행의 불이행과 관련한 책임은 제 4 조에 명시된 구체책 및 제 10.1(c)항 및 제 10.2 항에 명시된 고객의 해지권에 한정된다.

(b) 제 3 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책임은 제 11 조에 명시된 구체책에 한정된다.

(c) 본건 제품의 성능, 품질 또는 목적에의 적합성과 관련된 책임은 제 7.2 조에 한정된다.

(d) 수행된 본건 서비스의 성능, 품질 또는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책임은 제 7.7 조에 한정된다.

본 계약상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기타 사항(모든 형태의 배상청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Rotork 의 모든 책임은 본 계약상 공급되는 본건 제품 및 수행되는 본건 서비스의 가격 총액으로 한정된다.

8.3 Rotork 는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과실에 의하여 어떠한 부수적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8.4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사기(사기적 허위진술 포함),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또는 해당 제한이나 배제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어느 부분이 그러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본 계약의 부분을 그러한 배제나 제한이 법률에 의하여 허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된 규정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8.5 Rotork 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약 또는 법적 의무의 위반 등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의 손실, 또는 본 계약상 혹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입은 특별, 간접 또는 파생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다만 Rotork 가 영업상 이익의 손실, 또는 특별, 간접 또는 파생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6 고객이 Rotork 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고 Rotork 가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a) Rotork 가 직, 간접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로 인하여 그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한 결과 고객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가 Rotork 를 상대로 가지는 청구권(제 4.3 조 및 제 7 조에 따른 것 포함)을 포기하고,

(b)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Rotork 가 손실, 비용, 경비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Rotork 에 대한 제 3 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Rotork 가 부담하는 모든 손실, 비용 또는 책임으로부터 Rotork 를 전부 면책한다.

8.7 고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의 계열사가 Rotork 에 제기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Rotork 가 부담하는 모든 손실, 비용 또는 책임에 관하여 Rotork 에 배상한다.

9. 비밀유지

9.1 제 9.2 조 내지 제 9.3 조를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합리적인 정도의 주의 및 최소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며, 제공의 근거가 된 본 계약에 따라 그의 권리를 이행하거나 행사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9.2 제 9.1 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이미 공개된 정보

(b) 법률상 공개 의무 대상이거나, 관할 법원 또는 관할 규제당국의 통지 등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또는

(c) 정보 수령 당시 비공개 의무가 없는 제 3 자로부터 제한 없이 수령한 정보.

9.3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정보를 그의 직원, 대리인, 자문역, 보험사, 계열사 또는 하도급업체("대표자")에 공개할 수 있다. 단, 그들은 그들의 대표자가 본 조항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0. 해지 및 정지

10.1 일방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a)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관할구역에서 불법이 되는 경우

(b) 상대방 당사자가 지급불능사유를 겪는 경우, 또는

(c)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Rotork 가 연속 3 개월 간 본 계약상 그의 의무 이행을 중단하는 경우.

- 10.2 제 4.3 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최대금액에 도달한 경우, 고객은 Rotork 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지연된 본건 제품에 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고객이 지연된 본건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결과 본 계약상 인도되었거나 인도될 기타 본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된 본건 제품에 대해서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otork 가 본 제 10.2 조에 따라 해지된 본건 제품을 인도하였고/거나 고객이 이에 대하여 가격을 지급한 경우, 30 일 이내에,
- (a) 고객은 인도장소에서 FCA 조건으로 본건 제품을 Rotork 에 신속히 반환하고,
- (b) Rotork 는 본건 제품의 가격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 10.3 고객이 본 계약 또는 Rotork 와의 기타 계약상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지급기일로부터 10 일 간 지속되는 경우, Rotork 는 고객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0.4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리 및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Rotork 는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0.5 그의 기타 권리 및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고, Rotork 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 또는 고객과 Rotork 간의 기타 계약상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 (a) 고객에 관하여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b) 고객이 지급기일까지 본 계약 또는 Rotork 와의 기타 계약상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 (c) Rotork 가 본 제 10.5 의 (a)항 및 (b)항에 열거된 사유가 곧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Rotork 가 이행을 정지하였고 Rotork 가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상황이 그 후 중단되는 경우 (또한 Rotork 가 그의 기타 권리 및 구제책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Rotork 는 이행을 재개하되 그러한 이행의 기한은 정지기간만큼 연장된다.
- 10.6 해지의 원인을 불문하고, 본 계약의 해지는 해지 당시 발생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책, 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0.7 고객은 본 제 10 조에 명시된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1. 지적재산권**
- 11.1 제 11.2 조를 조건으로, 고객은 본 계약상 제공된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와 관련된, Rotork 가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Rotork 가 개발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 권리 또는 지분도 취득하지 아니한다.
- 11.2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인도물로서, Rotork 가 고객에게 제공한 서면 문서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을 본건 제품의 설치, 시운전, 운용 및 유지보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보유한다.
- 11.3 Rotork 는 그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 서비스의 제공기간 중 획득한 본건 제품의 구성 및 성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영구적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보유한다.
- 11.4 제 11.5 조를 조건으로, 제 3 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청구와 관련하여 Rotork 의 고객에 대한 유일한 책임은, 본 계약상 Rotork 가 제공한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는 것이 제 3 자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제 3 자의 청구로 인하여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발생한 책임에 관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 11.5 제 11.4 조에 포함된 손해배상은 다음과 관련된 침해에 대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변경을 Rotork 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한 본건 제품의 변경
- (b) 고객의 특정 지시에 따라 제조된 본건 제품
- (c) 고객이 계약상 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및/또는
- (d) 고객이 경감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손실.
- 12. 수출 조건**
- 12.1 수출의 경우 수출하는 당사자가, 수입의 경우 수입하는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해 요구되는 모든 필요한 면허 또는 기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할 책임을 진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면허 또는 인허가를 획득하는 데 있어 서로 협력하며, 각 당사자는 어느 당사자의 면허 또는 정부 인허가 신청과 관련해 필요한 본건 제품의 이전, 용도, 배치, 최종 용도, 공급원, 국적, 재수출에 관한 진술, 증서, 보증을 제공한다.
- 12.2 이러한 면허 또는 허가 취득과 관련된 정부 수수료나 요금은 본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당사자가, 본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당사자가 책임진다.
- 12.3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은 모든 관련 수출 법률과 수출 면허 제한을 준수하고, 나아가 고객은 다음을 준수한다.
- (a) 고객은 대한민국, 미국, 영국, 유엔, EU 또는 기타 관련 정부 기관 또는 단체가 본건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또는 국가로 본건 제품의 재판매를 청약하지 아니한다.
- (b) 고객은 고객이 알기에 또는 추정하기에 관련 단체가 본건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로 차후에 본건 제품을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본건 제품의 판매를 청약하지 아니한다.
- 12.4 고객은 Rotork 가 관련 수출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거나 또는 Rotork 가 조세의무를 이행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Rotork 가 본건 제품의 목적지 및 용도에 대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Rotork 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 13. 기타 사항**
- 13.1 본 계약에 따르거나 관련해 어느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해당 당사자의 등록된 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참조인을 총괄법률고문 또는 계약책임자로 한다.
- 13.2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 (a) 당사자들 사이에 파트너십 또는 합자회사를 구성하지 않으며,
- (b)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도록 하지 않으며, 또는

- (c) 당사자들 간에 신탁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다.
- 13.3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는 필요할 때 마다 행사될 수 있고, 누적적이고,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른 권리에 추가하여 적용되고, 오직 서면상 특정하여서만 포기할 수 있다.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 13.4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및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하는 기타 조항)는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하며, 그러한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완전한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 13.5 본 계약은 양 당사자들 간에 영문본으로 작성되었다. 본 계약과 본 계약의 번역본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영문본의 조항이 우선한다.
- 14. 완전한 합의**
- 14.1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목적사항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 14.2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항 이외에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 판매와 관련해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 합의, 고지, 양해 또는 보증(인지하지 못한 채 또는 부주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불문)에 의존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구제책도 갖지 않는다.
- 14.3 Rotork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일체의 상품성, 목적 적합성 또는 만족스런 품질과 관련한 조건이나 보증에 따라, 혹은 명시적 또는 법률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계약상 조건이나 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술된 이러한 모든 조건과 보증은 배제된다.
- 14.4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지고,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진술 또는 고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유일한 구제책은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책이다.
- 15. 뇌물 및 부패성 증여 방지**
- 15.1 양 당사자들은
- (a) 본 계약의 획득 또는 체결과 관련해 사기적 행위(특히 공급되거나 공급될 본건 제품의 특성,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한 또는 사용하는 제조방식이나 제조과정에 대한 사기)에 의존하지 않으며,
- (b) 본 계약 획득 또는 체결과 관련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하여 혹은 어떠한 행위를 하였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인책 또는 보상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의 직원에게 종류를 불문한 기증 또는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 또는 합의하지 않으며, 또는
- (c) 본 계약과 관련하여 윤리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 16. 원자력 책임**
- 16.1 본 제 16 조는 본건 제품이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거나 원자력시설의 구성요소 또는 일부로써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16.2 손상 또는 손해를 야기할 의도 또는 중과실에 의한 Rotork의 조직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고객의 재산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거나 고객의 재산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다음에서 기인하거나 다음과 관련한 청구(제 3 자 청구 포함)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해(청구가 발생 또는 제기된 관할권 여부 불문) Rotork 및 그 이사, 임원, 직원, 도급업체, 계열사, 공급자 모두를 배상하고 면책한다.
- (a) 원자력시설에서 나온 이온화 방사선 또는 원자력시설의 핵연료나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 의한 오염, 및/또는
- (b) 원자력시설에서 나온 이온화 방사선 또는 원자력시설의 핵연료나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 의한 오염을 대비해 마련한 예방조치.
- 상기 책임이 원자력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또는 손실로 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16.3 고객은 Rotork의 적절한 서면 동의 없이 본건 제품을 본건 제품이 원자력시설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또는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 17. 준거법 및 관할권**
- 17.1 본 계약 및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외의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 17.2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이견 또는 청구("분쟁")는, 계약, 불법행위, 형평법, 법률상 의무 위반 등에 기하여 발생함을 불문하고,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중재재판소 규칙에 따라 최종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중재 소재지 및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이며 중재 언어는 영어이다.
- 17.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선정하고 임명하는 중재인은 1 인이다.
- (a) 해당 분쟁에 관계된 금액이 KRW 1,500,000,000 이상(비용 및 수수료 제외)인 경우, 또는
- (b) 당사자들이 30 일 이내에 중재인의 선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위(상기 (a)목 또는 (b)목의 경우)의 경우에는 3 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 경우, 중재신청을 발송 또는 수령한 후(또는 상기 (b)목에 따른 중재인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 30 일 이내에 각 당사자가 중재인 1 인씩을 선정하고, 선정된 2 인의 중재인들이 나머지 중재인 1 인을 공동으로 선정한다. 만일 2 인의 중재인이 30 일 이내에 나머지 1 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ICC가 임명한다.
- 17.4 당사자들은 임명된 중재인들이 본안에 대한 이들의 판단 및 중재절차 진행(당사자들의 진행 행위 포함)을 고려하여 행정 비용, 수수료, 법률 비용, 증인 비용, 전문가 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한 중재 비용 및 수수료 부담을 할당하게 됨에 합의한다.
- 17.5 제 17 조는 적절한 법원에서 임시 보호조치를 구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의 보전은 어느 당사자의 중재에 대한 동의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7.6 당사자들은 제품의 국제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 않음에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별지 1 해석

1. 정의

본 일반판매조건 및 본 계약에서

“**송낙서**”란 고객의 구매주문에 대한 Rotork의 서면 송낙서(동 송낙서가 고객의 구매주문과 엄격히 부합되지 않을 경우, Rotork의 수정제안(counter-offer)으로 간주됨)를 뜻한다.

“**영업일**”은 Rotork의 설립 관할지에서 은행들이 영업을 위해 개점한 날을 의미한다.

“**본 계약**”은 제 2.1 조에 기재되는 의미를 갖는다.

“**고객**”은 구매주문을 발주한 자를 의미한다.

“**하자**”는 제 7.1 조의 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본건 제품을 의미하며, ‘**하자 있는**’은 이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된다.

“**인도**”는 제 4.2 조에 따른 본건 제품의 인도를 의미한다.

“**인도장소**”는 제 4.1 조에 기재된 의미를 지닌다.

“**분쟁**”은 제 17.2 조에 기재된 의미를 지닌다.

“**윤리 법률**”은 (a) 유엔부패방지협약(2003. 10. 31. 자 유엔총회 총회결의 58/4의 목적사항) 또는 1997. 11. 21. 채택된 국제 상거래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OECD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Rotork의 설립관할지, 고객의 설립관할지, 또는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가 인도되는 기타 관할지에 제정된 법률, (b)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c) 2001년 영국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 2002년 영국 범죄수익법, 2010년 영국 뇌물수수법,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제 241장), 미국 해외부패방지법(15 U.S.C. 제 78dd-1 조 이하)을 의미한다.

“**FCA**”는 Incoterms 2010에 기재된 의미를 지닌다.

“**불가항력사유**”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a) Rotork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 및/또는 (b) 천재지변, 관련 외국 또는 국내 법의 성실한 준수함에 따른 필수적 변경의 도입; 기타 정부 또는 사법 또는 규제 당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 화재, 홍수,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 폭동, 사고, 국가적 노동쟁의, 사보타주, 악의적 손해, 테러 행위 또는 테러 활동, 전기를 비롯한 필수 서비스 중단, 이상 악천후, 접촉 전염병, 전염병 또는 유행병을 대비하기 위한 검역이나 예비조치.

“**ICC**”는 국제상업회의소를 의미한다.

“**정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 형식이나 기타 형식으로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달리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어느 당사자의(또는 어느 당사자가 소유하는) 상업적, 재무적, 기술적 또는 운영적 정보, 노하우, 영업기밀 또는 기타 정보(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기타 합의 또는 문서상에 포함되는 규정 및 목적사항 포함)를 의미한다.

“**지급불능사유**”는 (a) 어떤 자가 지급불능으로 간주되거나 자신이 지급불능임을 서면 진술하거나, (b) 어떤 자 또는 그 자산의 해산, 청산, 또는 희생 목적상 어떤 자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지배나 감독을 받게 되는 지급불능절차 또는 집합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임시 절차 포함)의 대상이 되거나, (c) 어떤 자가 전체적으로 또는 어느 종류에 관해 채권자들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러한 지급 중지를 서면으로 선언하거나, 혹은 어떤 자의 사업 전부 또는 상당한 전부를 중단 또는 중지하거나, (d) 어떤 자가 전술된 (a)목 내지 (c)목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전술된 (a)목 내지 (c)목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등록 디자인, 상표권, 서비스마크(등록 여부 불문), 도메인명, 저작권, 디자인권, 데이터베이스권, 저작인격권, 영업비밀, 노하우, 메타태그, 소트허, 실용신안권 및 모든 유사한 지적재산권(발명, 디자인, 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상호, IP 주소, 영업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외양(get-up)/스타일/표현과 관련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권리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권리의 계속성, 재발급 또는 분할을 위한 신청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의미하며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당사자들을 의미한다.

“**원자력시설**”은 (a)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정의된 ‘원자력시설’, 또는 (b) 원자로를 포함하고 있는 선박이나 운송수단, 또는 (c) 원자로를 포함하거나 핵연료나 핵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기타 시설 또는 부지를 의미한다.

“**본건 제품**”은 Rotork가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구매주문**”은 본건 제품과 관련해 고객이 Rotork에게 발주하는 주문(Purchase Order)을 의미한다.

“**대표자**”는 제 9.3 조에 기재된 의미를 지닌다.

“**Rotork**”은 본 계약에 기재된 공급 당사자를 의미한다.

“**예정된 인도일**”은 본 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건 제품이 인도되는 날을 의미한다.

“**본건 서비스**”는 Rotork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양**”은 (i) 본 계약에 기재 또는 참조되는 바와 같은 또는 (ii) 당사자들이 차후에 합의하는 바와 같은 본건 제품의 기술 사양을 의미하며, (iii) 만일 합의된 기술 사양이 없을 경우, 본건 제품에 대한 Rotork의 사양을 의미한다.

“**세금공제**”는 세금을 대한 또는 세금을 사유로 한 공제를 의미한다.

“**제 3자**”는 본 계약 당사자들 이외의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무역 통제법**”은 미국, 영국, 유럽 연합 및 그 회원국과 관련된 수출 통제 및 무역 제재 법률, 규정, 규칙 및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보증기간**”은 제 7.2 조에 기재된 기간을 의미한다.

2. 해석

2.1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일반판매조건 및 본 계약에서

- “포함하다”, “포함하는”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들은 배타적으로 또는 해당 예시사항에 한정되게 해석되지 않으며, 전술된 용어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 해석한다.
- 어느 당사자 또는 어느 자에는 이들의 소유권의 승계인, 허가된 양수인, 허가된 피양도인이 포함된다.
- 단수를 뜻하는 단어는 복수의 뜻을 포함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성별을 지칭하는 경우 반대 성별도 지칭한다.

